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2023. 5.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조직·인사 운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사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23. 2. 6.부터 2. 10.까지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결과

대상 기관	총계 (가:다)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 사례 (다)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의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중소기업 일자리경제 진흥원	12	1 (1)	-	1 (1)	10	-	-					6	2	2		1	

Ⅲ. 주요 처분요구

① 수탁사업 수수료 집행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 등 2개 부서)은 '20. 7월부터 '22. 12월까지 도내 중소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탁사업(136건, 215.6억원)을 수행하였고, 수탁수수료 10억원을 징수

○ 「진흥원 수탁사업관리규정」 제5조 등에 수탁수수료는 수탁사업비 규모에 따라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수탁 시 계약서에 사업비, 수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탁의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 (5억원 이상) 5%

○ 또한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도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수탁사업을 종료 시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 등 2개 부서)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수탁수수료 정산 시 내부규정이나 협약내용에 사업비 집행률과 관계없이 전액 집행한다는 기준이 없는데도 111건(38.9억원) 수탁수수료 전액 집행

- 특히, '20년 '○○○○○○○ 기업 ○○○○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이 56.7%(5억 178만원)인데도 수수료 100%(4,659만원)를 집행

* 총사업비 9억 3,185만원(사업비 8억 8,525만원, 수수료 4,659만원)

☞ 수탁사업 정산 시 수탁수수료를 사업비 집행실적과 연동하는 등의 합리적인 수수료 정산 방안을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하도록 "통보"

② 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기획실)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임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경우 공가를 허가하는 등 복무 관리
- 「복무규정」 제14조에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 한편 진흥원은 '20년부터 '22년까지 2년마다 종합검진비*(1인당 30~35만원 지원)를 지원하면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1일 공가 처리한다는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계획'을 내부결재 받아 전 부서에 시행
 - *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계획'에 따라 총 84명에게 2,714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실)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가에 해당되는 않는 자체 종합검진을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여 ○○○ 등 63명이 82회 공가를 부적정 사용하도록 함
 - 그로 인하여 소속 직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공가 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579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되지 않은 종합건강검진을 공가 처리하도록 '종합검진 지원 계획'을 결재 받아 전 부서에 시행하여 복무규정 위반을 초래한 前 담당○○ **"훈계요구"**

☞ 앞으로 건강검진과 관련한 공가 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가하도록 **"주의요구"**

③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 관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인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에게 대해 징계 처분하는 업무를 추진
- 「인사규정」 제81조에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88조에 음주운전 비위행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위반 횟수, 인적 피해 등의 기준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하도록 규정
- ※ 수사기관은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대해 음주운전 비위 통보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미통보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9조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민원 24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발급 가능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 7월부터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자진신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미조회
- ※ 감사기간 음주운전경력증명서 임직원(43명)을 확인결과 음주운전비위자는 없음

☞ 주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확인하고 징계 관련 인사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4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63명(정규직 12, 비정규직 51)을 채용

1. 인사규정 개정 소홀

가. 채용시험 요건, 방법 규정 미반영

- 「출연기관 인사지침」에 공개·경력경쟁의 시험요건, 시험방법,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합격 결정방법 등은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개별 채용 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다고 규정
- 한편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에 '채용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면접방법' 등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전라남도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따른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채용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재단 인사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상위지침을 위반하여 운영

나. 성범죄 임용결격사유 적용 부적정

- 「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직원 신규채용 시 임용 결격사유에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를 참조하여 내부규정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성범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규정
- 한편 행정안전부는 '19. 4. 17.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 내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 인사 규정」 성범죄 결격사유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를 미반영

2. 성범죄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 「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에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관련 성범죄자는 진흥원 직원에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년부터 '21년까지 20차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단 한차례도 성폭력 범죄사실 여부 조회를 미 실시

3. 병역 미필자에 대한 채용 공고 차별 부담

- 「고용정책기본법」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또한 「진흥원 인사규정」 제63조에 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해 징집되었을 경우 제대 후 복귀일까지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20차례 신규채용 공고에 성별 등에 불리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응시자격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
- 그로 인하여 군 입대 예정자와 군 전역 예정자의 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입영휴직 조항이 사문화 되는 결과 초래

- ☞ 신규직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자격요건, 채용시험 요건, 과목별 배점, 합격 결정방법 등 제반사항과 성범죄 임용결격사유를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맞게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 ☞ 앞으로 직원 신규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채용 업무를 추진하고, 신규 채용 공고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응시 자격에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5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집행

- 위 진흥원(기업지원부 등 2개 부서)은 '20년부터 '22년까지 업무추진비를 1억 1,138만원을 편성하여 8,924만원을 집행

〈진흥원 업무추진비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사용액	집행잔액
합 계	111,380	89,924	21,456
2020년	37,380	28,057	9,323
2021년	36,920	29,706	7,214
2022년	37,080	32,161	4,919

-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도록 규정
- 또한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출연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도지사(주무부서) 승인을 받아 추가 편성하도록 규정

* 진흥원 시책업무추진비 연간 기준액 : '20년부터 '22년까지 10백만원

-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 등 2개 부서)은 '20. 6. 12.부터 '22. 11. 16.까지 시책사업 행사 홍보물 및 기념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고 31건 8,019만원을 광고선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적정 집행
- 그 결과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기준액 5,019만원*을 초과 집행하여 방만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결과 초래

* 기준액 초과 현황 : '20년(202만원), '21년(563만원), '22년(4,254만원)

☞ 앞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는 도지사(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가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요구"

⑥ 행사홍보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위 진흥원(기업지원부 등 2개 부서)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자, 초청인사가 참가하는 행사, 교육, 회의를 개최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은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 맞게 편성하여야 하고, 행사홍보비는 각종 일반수용비·임차료·강사료로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 등 2개 부서)은 '20. 7월부터 '22. 12월까지 다과비, 초청인사 식비, 외빈 숙박비를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 예비교육 다과비' 등 128건 2,798만원을 부적정 집행

☞ 앞으로 다과비, 초청인사 식비, 외빈초청 여비 등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요구"

7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은 '19년 7월부터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의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주), (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

〈진흥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배정인원	배정액	협약업체	협약방법
합계		79,891		
2020	41명	29,040	○○○○○(주), (주)○○은행	'19년 협약체결('19.7.1 ~'20.12.31)
2021	30명	25,410	○○○○○(주), (주)○○은행	협약 자동연장
2022	41명	25,441	○○○○○(주), (주)○○은행	협약 자동연장

- 「예산회계규정」 제81조에 **매매, 임차, 그 밖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을 부쳐야 하고, **수익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체결 없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체를 **협약을 체결하여** 선정하는 등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 앞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자 선정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을 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8 물품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물품 관리규정」에 따라 물품을 취득, 보관 및 처분하는 업무를 추진

1.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 「물품관리규정」 제33조 등에 진흥원의 모든 물품의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재물조사를 매년 6. 30. 실시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34조에 재물조사 후 문제점 발견 시 과부족 원인규명, 과다물품 대책 강구, 불용품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 물품관리를 도모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 8. 5. '20년 정기재물조사만 실시한 채 '21, '22년* 정기재물조사를 미실시하였고, '20년 하반기부터 구매한 데스크톱 등 15건 2,687만원의 물품이 정기재물조사대상에 누락된 채 방치

* '22년 정기재물조사는 '22. 12. 27.부터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진행 중

2. 물품관리규정 정비 소홀 관리업무 소홀

- 「규정관리규정」 제2조 등에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에 불일치되지 않게 제정하도록 규정
- 한편 진흥원은 물품을 자산·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물품관리규정」과 「예산회계규정」의 세부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규정

〈 규정별 물품의 구분 기준 상이 현황 〉

규정명	자산·비품	소모품
「물품관리규정」 제8조	내용연수 1년 미만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물품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3만원 이하 파손 쉬운 물품
「예산회계규정」 제118조	내용연수 1년 미만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물품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파손 쉬운 물품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제정하지 않고 「물품관리규정」과 「예산회계규정」 자산·비품과 소모품의 취득단가 구분이 불일치한 채로 운영

☞ 앞으로 정기재물조사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물품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의 물품 관련 취득단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IV. 모범 사례

1 |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확산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제도 운영 요청 수요 대응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추진개요

-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750억원 편성 및 지원
 - ※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2~2.5%)를 지원
-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기업 지원
- 만기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영안정자금 기이용건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실시

□ 추진실적

- 긴급경영안정자금 1차 350억원, 2차 400억원 편성
 - 총 187개사, 848억원 추천, 175개사, 743억원 대출 실행
- 긴급자금 운영 시 지원한도 상향, 지원업종 확대 지원
 - 지원한도 : 기존 5억→10억
 - 지원업종 : 병의원 6개, 41억원, 택시법인 7개, 24억원 등
-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실시
 - 만기연장(17개사), 상환유예(2개사)

□ 기대효과

- 이자부담 및 만기 상환부담 경감으로 경영 안정화에 기여

V. 처분요구서

목 차

① 수탁사업 수수료 집행 부적정(통보)	14
② 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훈계, 주의)	18
③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 관리 부적정(통보)	22
④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개선, 주의, 통보)	24
⑤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집행(주의)	30
⑥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34
⑦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37
⑧ 물품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개선)	39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수탁사업 수수료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기업지원부, 일자리지원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 1] “수탁사업 현황”과 같이 전라남도로부터 수탁사업¹⁾(136건, 사업비 215.6억원)을 수행하면서, 수탁수수료²⁾ 10억원을 받았다.

[표 1] 수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건수	예 산	수탁수수료
계	136	21,560,264	1,007,514
2020년	42	8,600,488	371,328
2021년	48	7,353,828	334,955
2022년	46	5,605,948	301,231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관」 제3조 9호에 따르면 진흥원은 정부, 도지사,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지원을

1) 진흥원이 외부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업

2) 수탁받은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진흥원이 징수하는 수수료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탁사업관리규정」(이하 “진흥원 수탁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수탁수수료는 수탁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표 2] “수탁수수료 산정기준 현황”과 같이 기준요율을 적용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위탁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기준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 수탁 시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사업비, 수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탁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수탁수수료 산정기준 현황

사업비 규모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준요율	15%	10%	7%	5%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탁사업관리규정」 일부 발췌

그리고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Ⅱ. 예산편성의 원칙 2. 독립채산의 원칙 2-2.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서 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도(시·군)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 외부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전라남도지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육성 등 사업을 위탁받을 때 수탁수수료는 「진흥원 수탁사업관리규정」에 따른 기준요율 및 수탁수수료 관련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하고, 수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 일자리지원부)은 2020. 7. 1.부터 2022. 12. 31.까지 수탁수수료 관련 협약서에 사업비 집행률과 관계없이 전액 집행한다는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도 [별표] “수탁수수료 세부 집행 명세”와 같이 “○○일자리 종합센터운영” 등 136건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111건 3,894,100천원에 대한 수탁수수료는 전액을 정산 처리하였다.

특히 “○○○○○○기업 ○○○○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931,850천원(사업비 885,258천원, 수수료 46,592천원) 중 사업비 집행률이 56.7%(501,782천원)인데도 수수료를 100%(46,592천원)를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수탁사업 정산시 수탁수수료를 사업 집행실적과 연동하는 등의 합리적인 수수료 정산 방안을 전라남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영기획부)

훈 계 대 상 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부 ○○직 ○급
○○○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경우 공가를 허가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

○○직 ○급 ○○○은 2020. 9. 1.부터 2022. 1. 16.까지 경영기획부에서 임직원 복무관리 및 건강검진 관련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복무규정」 제14조 제4호 따르면 원장은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공가를 허가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2년마다 중

합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하면서 해당 건강검진 대상자는 1일 공가 처리한다는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계획’¹⁾ 내부분서 결재를 받은 후 총 84명²⁾에게 27,145,000원의 건강검진비³⁾를 지원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소속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신청할 때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계획’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연차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계획’의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공가를 사용하도록 최종결재권자인 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별표] “공가 부적정 사용 및 연차수당 부담 지급 명세”와 같이 경영기획부 ○○○ 등 63명의 임직원이 82회에 걸쳐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연가가 아닌 공가를 사용함으로써 경영기획부 ○○○ 등 42명에게 지급되지 말아야 하는 연차수당 5,790,480원이 부당하게 지급하게 하는 등 임직원에게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
- 1) 1. 2020년 임직원 건강검진 추진계획(안) 진흥원-0000(2020. 02. 19.) 담당자 ○○○, 검토 행정지원팀장 ○○○, 검토 경영기획부장 ○○○, 결재 진흥원장 ○○○
 2. 2021년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계획(안) 진흥원-000(2021. 01. 18.) 담당자 ○○○, 검토 전략기획팀장 ○○○, 검토 경영기획부장 ○○○, 결재 진흥원장 ○○○
 3. 2022년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계획(안) 진흥원-0000(2022. 02. 18.) 담당자 ○○○, 검토 전략기획팀장 ○○○, 검토 경영기획부장 ○○○, 결재 진흥원장 ○○○
- 2) 연도별 건강검진비 지원 인원 : 2020년(36명), 2021년(18명), 2022년(30명)
- 3) 1인당 최대 건강검진비 지원액 : 2020년(300천원), 2021년(350천원), 2022년(350천원)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되지 않은 종합건강검진을 공가 처리하도록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계획’을 결재받아 전 부서에 시행하여 복무규정 위반을 초래한 업무 담당 ○장 ○○직 ○급(○○ 0급)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건강검진과 관련한 공가 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대한 공가 관련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영기획부)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인사규정」(이하 “진흥원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이 확인 될 경우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 인사규정」 제81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8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하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횟수, 인적 피해 등 기준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수사사실은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는 반면, 출연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수사 사실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이 통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관련 인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속 임직원의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0. 7. 31.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의 관리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이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¹⁾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임직원이 음주운전 관련 수사를 받고도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관련 인사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음주운전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징계 관련 인사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감사 기간 진흥원 소속 임직원 45명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 결과 육아휴직자 2명을 제외한 43명은 음주운전 사실은 없었음

전라남도

개선·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영기획부)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인사규정」(이하 “진흥원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 공고별 전형 단계를 거쳐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1] “재단 직원 신규채용 현황”과 같이 63명의 직원(정규직 12, 비정규직 51)을 신규채용 하였다.

[표 1] 재단 직원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연번	구분	채용형태	공고일	직종	직급·분야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	최종선발인원
계						63	723	54
1	정규직	공개채용	2020.08.12.	일반직	행정6급	1	19	1
2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1.01.07.	계약직	계약직	11	42	11
3	정규직	공개채용	2021.01.19.	공무직	공무직	2	64	2
4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1.03.05.	계약직	계약직	3	12	3
5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1.04.28.	계약직	계약직	2	2	1
6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1.06.01.	계약직	계약직	1	0	0
7	정규직	공개채용	2021.08.26.	일반직	행정마급	1	6	1
8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1.12.20.	계약직	계약직	2	6	2
9	정규직	공개채용	2021.12.20.	일반직	행정마급	5	232	5
10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2.01.17.	계약직	계약직	3	3	1
11	정규직	공개채용	2022.01.20.	일반직	행정마급	3	157	3
12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2.02.09.	계약직	계약직	11	34	10
13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2.04.04.	계약직	계약직	7	21	6
14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2.05.02.	계약직	계약직	1	3	0
15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2.06.13.	계약직	계약직	2	19	2

연번	구분	채용형태	공고일	직종	직급·분야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	최종선발인원
16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2.06.27.	계약직	계약직	1	5	1
17	정규직	공개채용	2022.07.11.	일반직	계약직	1	3	0
18	정규직	공개채용	2022.08.11.	일반직	행정마급	1	7	1
19	정규직	공개채용	2022.09.14.	일반직	행정마급	2	47	1
20	비정규직	공개채용	2022.11.21.	계약직	계약직	3	41	3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인사규정 개정 소홀

2-1. 채용시험 요건·방법 규정 미반영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 채용 다 채용요건·시험방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 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제8항에 따르면 채용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면접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채용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 결정방법 등은 「진흥원 인사규정」으로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된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등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에

정하지 않은 채 상위 지침을 위반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1. 성범죄 임용결격사유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 마. 결격사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참조하여 내부규정에 임용 결격 사유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제6호의4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¹⁾는 [표 2] “「지방공무원법」 성범죄 결격사유 현황”과 같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표 2] 「지방공무원법」 성범죄 결격사유 현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 3 및 제6호의 4 성범죄 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법」 제31조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료 : 「지방공무원법」 발췌

따라서 진흥원은 「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성범죄와 관련된 임용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시험공고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는 2019. 4. 17.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의 성범죄 결격사유를 개정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임용결격사유가 2019. 4. 17.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되었는데도 [표 3] “성폭력 처벌 관련 「지방공무원법」 임용 결격사유 현황”과 같이 개정하지 않은 채 신규 직원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하여 공고하였다.

[표 3] 임용 결격사유 성폭력 처벌 관련 진흥원 인사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비교 현황

구분	진흥원 인사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임용 결격사유
임용결격 성범죄범위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 범죄’
	(없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임용결격 성범죄형량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임용결격 기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
비고	개정 이전 「지방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인사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발췌

3. 성범죄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 6호에 따르면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²⁾

또한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같은 규정 제11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 6호는 “1. 인사규정 개정 소홀 - 나.성범죄 임용결격사유 적용 부적정”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격사유를 적용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개정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0년 7월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63명을 채용하면서 단 한차례도 성폭력 범죄사실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병역 미필자에 대한 채용 차별 부당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가목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① 직원의 인사(신규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인사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귀일까지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5. 1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여 「경찰공무원」 개정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2020. 8. 7.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 공고’부터 신규채용에 병역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고 특정한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없도록 채용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1] “진흥원 직원 신규채용 현황”과 같이 20차례 신규직원 채용 공고에 성별, 특정 집단에 불리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고문 응시 자격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이 응시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 결과 군 입대 예정자와 군 전역 예정자는 채용시험을 지원조차 할 수 없어 응시 기회를 박탈하였고 진흥원 인사규정 중 입영휴직 조항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 ① 신규직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자격요건, 채용시험 요건, 과목별 배점, 합격 결정방법 등 제반사항 반영 및 성범죄 임용결격사유를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맞도록 「진흥원 인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라고(제도상 개선)
- ② 앞으로 직원 신규채용 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채용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직원 신규채용 공고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응시자격에 성별을 차별하는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집행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영기획부,일자리지원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재단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¹⁾를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표 1]과 같이 111,380천원을 편성하여 89,924천원을 지출하였다.

[표 1] 진흥원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사용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11,380	89,924	21,456	
2020년	37,380	28,057	9,323	
2021년	36,920	29,706	7,214	
2022년	37,080	32,161	4,919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정안전부) Ⅱ.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에 따르면 당해년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²⁾ 성격의 경

1)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2)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

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출연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필요시 출연기관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주무부서) 승인을 받아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기 위해 [표 2] “진흥원 업무추진비 편성 연간 기준액 현황”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내에서 편성하도록 통보하였다.

[표 2] 진흥원 업무추진비 연간기준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책사업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진흥원은 시책사업 주요행사를 개최하면서 제작되는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은 연간기준액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도지사(주무부서) 승인을 받아 추가편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 일자리지원부)은 2020. 6. 12.부터 2022. 11. 16.까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 참여자 홍보물 및 기념품을 기준금액 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했어야 하는데도 [별표]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정 명세”와 같이 “○○센터 홍보물품 제작” 등 31건 80,196천원을 광고선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표 3]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현황”와 같이 50,196천원(2020년 2,020, 2021년

출한 금액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5,630, 2022년 42,543)을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써 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방만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기준액(A)	실제 집행액(B)	초과금액(B-A)	비고
합 계	30,000	80,196	50,196	
2020년	10,000	12,020	2,020	
2021년	10,000	15,630	5,630	
2022년	10,000	52,546	42,546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는 도지사(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추가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홍보비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영기획부,일자리지원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자, 초청인사가 참가하는 행사, 교육,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산은 세입 및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편성하고, 회의비는 기관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포함)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하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또는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또는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등으로 편성하고, 외빈초청여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로 편성하고 예산집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 ② 경비 나. 세부집행 요령 9) 행사·홍보비 집행 유의사항에 따르면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은 해당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과목에 맞게 편성하고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 일자리지원부)은 2020. 7. 30.부터 2022. 12. 30.까지 행사를 위한 다과비, 초청인사 식비, 참가자 식비, 외부초청 여비 등은 회의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외부초청여비으로 집행하여야 했는데도 [별표] “행사홍보비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정 명세”와 같이 “4050 ○○○○ 예비교육” 등 128건 27,978천원을 행사·홍보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다과비, 초청인사 식비, 외부초청 여비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세출예산 과목해소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영기획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 7. 1.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과 같이 ○○○○○(주), (주)○○○○과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복지제도¹⁾를 운영하고 있다.

[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

연도	배정인원	배정액(천원)	협약업체	협약방법
합계		78,891		
2020	41명	29,040	○○○○○○(주), (주)○○은행	2019년 협약체결 (2019.7.1 ~2020.12.31)
2021	30명	25,410	○○○○○○(주), (주)○○은행	협약 자동연장
2022	41명	25,441	○○○○○○(주), (주)○○은행	협약 자동연장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회계규정」(이하 “진흥원 예산회계 규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매매, 임차, 공사의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

1)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

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82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처분,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체결 절차 없이, 2019. 6. 25. 제휴협약이라는 임의의 방식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협약 체결하였다.

또한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년씩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체결 절차 없이 맞춤형 복지제도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자 선정 시 「진흥원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을 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통보

제 목 물품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경영기획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물품관리규정」(이하 “진흥원 물품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 보관 및 처분하는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모든 물품의 실제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재물조사를 매년 6. 30. 현재로 실시하고, 8. 31.까지 원장의 결재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재물조사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과부족 원인규명, 과다물품 대책 강구, 불용품 처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모든 물품에 대해 매년 6. 30.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에 따라 합리적 물품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매년 6. 30.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표 1] “정기 재물조사 실시 현황”과 같이 2021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2022년은 2022. 11. 14.에서야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1] 정기 재물조사 실시 현황

연도	계획수립일	결과보고일	실시결과	비고
2020	2020.08.05.	2020.10.14.	74개 불용처리 (가구 30, 기기 44)	
2021	-	-	-	미실시
2022	2022.11.14.	진행중	진행중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구입한 물품 중 [표 2] “재물조사 누락 물품 현황”과 같이 데스크톱, 모니터 등 15건, 30개, 26,878천원의 취득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가 미실시 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표 2] 재물조사 누락 물품 현황

연번	구입일자	품목	구입수량	단가(천원)	구입액(천원)
	계	15건	30개	20,693	26,878
1	2020.11.03.	데스크톱	3	920	2,760
2	2020.11.03.	모니터	10	245	2,450
3	2020.11.03.	노트북	3	920	2,760
4	2020.12.17.	화이트보드	2	250	500
5	2020.12.24.	전기히터	2	50	100
6	2021.03.30.	외장하드	1	99	99
7	2021.04.02.	무선재부재시스템	1	169	169
8	2021.05.10.	무선차임벨	1	169	169
9	2021.08.31.	RFID 라벨프린터	1	3,797	3,797
10	2021.08.31.	바코드 PDA 리더기	1	715	715
11	2021.08.31.	모바일 바코드	1	2,200	2,200
12	2021.09.13.	상담데스크 책상	1	660	660
13	2021.09.13.	화상방음부스	1	9,900	9,900
14	2021.09.27.	기업애로상담소 전산랙	1	500	500
15	2021.10.18.	외장하드	1	99	99

자료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3. 물품관리규정 정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규정관리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규정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에 불일치되지 아니하게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은 물품을 자산·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물품관리규정」 제8조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회계규정」(이하 “진흥원 예산회계규정”이라고 한다) 제118조의 물품 구분 기준이 [표 3] “규정별 물품의 구분 기준 현황”과 같이 취득단가에 대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표 3] 규정별 물품의 구분 기준 현황

규정명	자산·비품	소모품
「물품관리규정」 제8조	내용연수 1년 미만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물품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3만원 이하 파손 쉬운 물품
「예산회계규정」 제118조	내용연수 1년 미만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물품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파손 쉬운 물품

자료 : 관련 규정 발체

따라서 진흥원은 「진흥원 물품관리규정」과 「진흥원 예산회계규정」의 취득단가에 대해 불일치하는 물품의 구분 기준을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물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때 불일치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제정하여야 했는데도, 「진흥원 물품관리규정」과 「진흥원 예산회계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 기준을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물품관리를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① 앞으로 물품 재물조사는 「진흥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6. 30.에 실시하여 결과 분석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주의)

② 「진흥원 물품관리규정」과 「진흥원 예산회계규정」의 물품 관련 취득단가가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